

한의예·학과 장학위원회 지침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대구한의대학교 학칙 제60조 규정과 장학금관리규정에 준하여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예과, 한의학과의 장학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장학위원회(이하 위원회)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학장이 위촉하는 교수와 당연직인 부학장과 한의학과장, 한의예과장, 행정실장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학장이 되고 간사는 한의학과장이 된다.

제3조(임기)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기능) 장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
2. 그 밖에 장학 사업에 관한 사항
3. 외부 장학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제5조(회의 및 보고)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고,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수시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불가능한 위원은 위원장에게 출석 및 의결권 행사 등을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회의 개시 전에 위원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6조(외부장학위원회)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외부 장학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외부장학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하며, 외부장학위원회의 관리 및 운영은 외부장학위원회 규정을 따른다.

부 칙

(시행) 이 지침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